

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
선거인명부 및 후보자 확정 등의 공고

우리 구 『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』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」제82조 및 ‘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’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54호, 2016.11.10.) 제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를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22일
광진구청장

1.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: 2025. 12. 1.(월) ~ 2025. 12. 12.(금)

2. 선거인 명부 확 정 일 : 2025년 12월 17일(수)

3. 선거인명부 확정내용

구역명	선거권자 수	선거권이 없는자 수 (대표자 미선임 등)	확정된 선거인 수	선거권자 수 대비 선거인 수 비율(%)	비고
자양4동A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	1,526명	151명	1,375명	90.10%	

4. 부위원장 선거일 : 2026년 1월 10일(토) 09:00~18:00

5. 후보자 확정 내용

선거명	기 호	성 명	성 별	생년월일	소유물건 지번	주거유형
자양4동A구역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선거	1	박 노 경	남	1984.02.24.	자양동 57-6	공동주택
	2	남 광 현	남	1984.08.09.	자양동 200	공동주택

※ 부위원장 선거 낙선거 1인은 주민협의체 위원 당연직 선임함.
※ 주민협의체 위원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추천하며, 본인 불참 시 공공지원자가 추천함.

6. 후보자 합동연설회

- 가. 합동연설회 일시 : 2026년 1월 6일(화) 16:00
나. 합동연설회 장소 : 광진구청 (구)청사 대강당(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)
다. 참 석 자 격 : 자양4동 A구역 토지등소유자
- ※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외 가족 등 동반자의 참석은 제한함.
※ 대리인 참석 시 토지등소유자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.

7. 기타사항

자양4동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 및 위원 추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「선거관리계획서」(붙임자료 참조)에 의하며,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”(서울시고시 2016-354, 2016.11.10.)과 “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”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40호) 및 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”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43호)을 준용함. 끝.

붙임 선거관리계획서 1부.

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
주민협의체 부위원장 및 위원 선임에 위한

선거관리계획서

2025년 12월 22일

- 공 공 지 원 자 : 서울특별시 광진구청
- 정 비 사 업 전 문 관 리 업 자 : 주식회사 람코리아

선거관리계획서

본 선거관리계획서는 “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”(서울시고시 2016-354, 2016.11.10.)과 “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”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40 호) 및 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”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43호)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으며, 이 선거관리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공지원자가 별도로 정한다.

이 적 용 기 준

본 선거관리계획서는 “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 및 위원 선임”에 적용한다.

가. 선거개요

- 1) 선출하여야 할 부위원장 : 1인
- 2) 선임하여야 할 위원 : 75인

나. 임기 시작 및 만료일

선출(선임)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일 까지

가. 선거일정

일 정	내 용	비 고
25. 11. 21.	○ 선거인 명부 열람공고/후보자 등록 공고	
25. 12. 01. ~ 25. 12. 12.	○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후보자 등록	공공지원 사무실
25. 12. 15. ~ 25. 12. 19.	○ 후보자 적격심사	
25. 12. 17.	○ 부위원장 기호 추천	공공지원 사무실
25. 12. 19.	○ 공보물 제출	
25. 12. 22.	○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/부위원장 후보자 확정 공고	
25. 12. 24.	○ 공고문 및 선거공보 발송(서면투표지 동봉)	
25. 12. 29. ~ 26. 01. 02.	○ 투·개표 참관인 신청 접수	
25. 12. 29 ~ 26. 01. 09.	○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	
25. 12. 29. ~ 26. 01. 09.	○ 부위원장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	
26. 01. 06.	○ 합동연설회	광진구청 (구)청사 대강당
26. 01. 08.	○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	서울시 50플러스(동부)
26. 01. 10.	○ 부위원장 선거	공공지원 사무실
26. 01. 14.	○ 부위원장 당선인 공고 및 주민협의체 구성 공고	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나. 투·개표 일정

1) 서면(우편)투표

- ① 기간 : 2025. 12. 29.(월) ~ 2026. 1. 9.(금)
(16:30까지 도착분에 한함)
- ② 방법 : 공공지원자가 발송한 서면(우편)투표용지(파란색지)를 회신용봉투(우편재
증)에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 또는 직접제출.
※ 선거일 전일 16:30까지 도착분에 한함.
※ 서면직접제출은 대리인 제출불가. 제출시 본인 신분증 지참

2) 전자투표

- ① 기간 : 2025. 12. 29.(월) ~ 2026. 1. 9.(금)
(16:30까지 완료분에 한함)
- ② 방법 : 공공지원자가 발송한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전자투표 페이지에 접속
본인인증 후 전자투표.
**※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, 중복으로 참여할
경우 “서면투표”가 우선함.**

3) 선거일 현장투표

- ① 일시 : 2026년 1월 10일(토) 9:00 ~ 18:00
- ② 장소 : 공공지원사무실 (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길 14, 2층)
- ③ 방법 : 신분확인 후 무기명 직접투표

다. 투·개표 장소

- 1) 서면(우편)투표 접수 : 공공지원사무실(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길 14, 2층)
- 2) 투표 및 개표 장소 : 공공지원사무실(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길 14, 2층)
※ 상기 일정 및 장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게시

라. 합동연설회

- 1) 일시 : 2026년 1월 6일(화) 16:00
- 2) 장소 : 광진구청 (구)청사 대강당 (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)
- 3) 참석 : 자양4동 A구역 토지등소유자
※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외 가족 등 동반자의 참석은 제한
※ 대리인 참석시, 토지등소유자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- 4) 연설행법
- ① 각 후보자별 연설회 시간은 “15분 이내”로 함
- ② 연설의 내용은 본인에 대한 홍보로 하며,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 사실
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할 경우 연설은 강제 중단됨

- ③ 연설 중 사용할 프레젠테이션 자료 또는 영상자료 등은 연설회 전일까지 공공지원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.
- ④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부여하지 않음.

03 선거관리 기준

가. 선거권

선거인명부 확정공고일 기준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

나. 피선거권

1) 부위원장

토지등소유자 (공유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대표자 선임 동의를 받은 자)이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

- ① 5년 이상 소유 또는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(상가 등의 경우 영업)한 자
- ② 토지등소유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※중복 추천 불가
-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2) 위원

토지등소유자 (공유자인 경우 대표자 선임동의를 받은 자)이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

- ① 5년 이상 소유 또는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(상가 등의 경우 영업)한 자
- ② 토지등소유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※중복 추천 불가
-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다. 선임방법

1) 부위원장

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여한 선거를 통해 서면(우편)투표, 전자투표 및 현장 투표의 방법으로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. 다만,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.

2) 위원

- ① 공개모집 후 [위원 할당 기준]에 따라 선임
 - 2인 이상 공동소유 세대의 경우 공유자 중 1인에 한하여 추천 가능
 - 입후보자 75명 이내인 경우 전원 선임
 - 입후보자 75명 초과 시 추첨으로 선정

[위원 할당 기준]

- 주거유형별 비율에 따라 인원 할당
 - i) 공동주택소유(50%) _ 38명
(부위원장 후보 중 낙선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37명 추천함)
 - ii) 단독주택 또는 토지소유(40%) _ 30명
 - iii) 상가 및 점포 등 소유(10%) _ 7명
- ※ 선임 위원이 홀수임에 따라 실제 분포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에 0.5명 가산함.
- 각 형태별 비율에 따른 인원이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함.
- 각 형태별 비율에 따른 인원이 미달될 경우 선정 비율
 - i) 50%, ii)+iii) 50%

[위원 추첨 기준]

- 위원후보자 본인추첨원칙(대리인참석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제출)
- 추첨일에 미참석시 주민협의체위원장 또는 공공지원대행자가 대리추첨
- 세부일정계획 변경 시 별도 공지함

라.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결정

1)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사유

- ①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
- ② 후보자가 자진하여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
- ③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·변조·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
- ④ 후보자 서약서의 서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
- ⑤ 추천서가 금품 제공 등으로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
- ⑥ 후보자 등록공고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⑦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⑧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행위
- ⑨ 후보자연설회 또는 선거운동 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

2) 등록취소 및 당선 무효자의 소명 절차

: 공공지원자의 통지일로부터 3일 내 소명서 제출

3)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결정방법 : 공공지원자 결정에 의함

마. 부위원장 후보 선거공보물 제출

- 1) 제출기한 : 2025년 12월 19일(금) 오후 4시까지
- 2) 제출장소 : 공공지원 사무실 (광진구 능동로3길 14, 2층)
- 3) 작성방법
 - 용지크기 : A4(210mm×297mm)

- 재 질 : 임의
- 디 자 인 : 후보등록자가 홍보물 디자인하여 제출 (2면으로 한정)
 - 여백이 없도록 디자인
 - 글씨체, 크기 임의
 - 칼라 사용가능
 - 상단 선거명의 위치, 크기 필수 기입 및 임의 변경 불가
(※ 후보자 기호 배정 및 협약 시 협의 후 결정)
- 칼 라 : 사용가능
- 제출매수 : 2매 및 전산파일(원본 및 PDF파일)
- 기재사항 (필수)
 - 성명, 나이, 후보자 기호
 - 사진(크기 임의)
 - 학력·경력 등 주요 약력
 - 권리내역(소재지, 건물 or 토지면적(m²), 공유지분 소유여부 기재)
 - 정견 또는 공약

바. 선거운동 관련 주요 금지행위

- 1) 제3자의 선거운동 금지
(후보자 본인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선거운동 가능)
- 2) 기부행위 및 금품, 향응, 음식물 제공 및 약속 등 일체 금지
- 3) 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(대화방, 인터넷 게시판, 동영상 등 허위사실 유포 및 타후보자 비방행위)
- 4)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- 5) 선거운동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호별 방문(OS인력을 통한 행위 포함)
- 6)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
- 8) 선거운동 중 스피커, 마이크 등 음향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
- 8) 차량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9) 모든 선거운동 자료(현수막, 문자(SNS포함), 전단지, 유튜브, 인터넷을 통한 홍보자료 등)는 선거권자에게 배포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10) 기타 제한/금지 및 위반행위 범위는 “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”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40호) 및 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”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43호)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.

사. 선거운동 기간 및 금지행위 등에 따른 조치

- 1) 선거운동 기간 : 2025년 12월 29일(월) ~ 2026년 1월 9일(금)
- 2) 선거운동 방법 : 선거공보, 어깨띠(100*1800mm), 명함, 현수막(2개 이하 개수 제한), 문자(SNS포함) 발송

3) 선거운동 시간

- ① 직접 홍보 : 오전 9시 ~ 오후 6시
- ② 간접 홍보 : 오전 9시 ~ 오후 8시 (전화, 문자, 인터넷 등, 야간 선거운동 제한)
- ③ 선거운동 자격자(선거운동원) : 후보자 본인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.
- ④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
구 분	조 치 사 항
1차 적발	- 경고 및 시정명령 (유선으로 시정조치 명령하고 문서로 위반사항과 경고 내용을 고지) - 경고 내용 등을 정보 몽땅 및 선거인에게 공지
2차 적발	- 후보자격 박탈가능 - 자격박탈내용 등을 정보몽땅 및 선거인에게 공지

아. 투표 및 개표 관리

- 1) 투표용지 및 우편투표용지 제작 : (규격)A4
- 2) 당선인 결정방법
부위원장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주민대표자로 선임한다. 이 경우 서면, 전자 및 현장 투표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출(단일 후보자인 경우 찬반 투표)하며,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한다. 위원의 경우 후보자가 75명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원 할당 기준에 의하여 추첨을 통해 선임한다.
- 3) 서면(우편)투표자에 대한 선거인명부 표시방법 : 서명, “○”, “√”
- 4) 기표방법 : 본인 자필 서명, 지장날인, “○”, “√” 등으로 표기
- 5) 회송방법 : 동봉된 회송용 봉투 등으로 우편 접수
- 6) 서면(우편)투표함 봉인 : 투표종료 시 공공지원대행자 직인 날인 후 봉인
- 7) 서면(우편)투표함 보관 : 공공지원사무실 보관 및 시·군·자치단체 관리
- 8) 사전투표 및 현장투표함 관리 : 투·개표 참관인 참관하에 투·개표 실시
- 9) 무효투표
 - ① 공공지원자의 날인이 없거나(공공지원대행자의 날인을 포함한다)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
 - ② 기표가 안 된 경우
 - ③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

자. 투·개표 참관인

- 1) 신청기간 : 2025년 12월 29일(월) ~ 2026년 1월 2일(금) 09:30 ~ 17:30
(12:00~13:00 제외,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)
- 2) 신청장소 : 공공지원 사무실 (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길 14, 2층)
- 3) 신청방법 : 후보자등록 공고 붙임 서식 작성 및 제출(제13호 및 제14호 서식)
- 4) 자격 등 : 부위원장 후보자 1인당 참관인 2명 이내 가능하며, 참관인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한함.

차. 위원 추천 및 부위원장 선거 개표

- 1) 위원의 추천
 - ① 추천장소 :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**모두의 강당**(광진구 능동로3길 73, 2층)
 - ② 추천일시 : 2026년 1월 8일(목) 19시
 - ③ 추천방법 : 주거유형별, 접수번호 순으로 본인 직접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, 본인 불참 시 주민협의체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자(공공지원대행자)가 추천
※ 부득이 대리인이 참석할 시 위임장 제출하여야 함(위임인 인감도장 날인, 인감증명서 첨부, 대리인 신분증 사본).
- 2) 부위원장
 - ① 개표장소 : 공공지원 사무실 (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길 14, 2층)
 - ② 개표일시 : 2026년 1월 10일(토) 18시
 - ③ 개표방법 : 참관인의 참관하에 공공지원자(공공지원대행자)가 개표
 - ④ 개표소에는 공공지원자(공공지원대행자 포함),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음.

카. 선거사무에 대한 이의제기

선거사무에 관한 모든 이의제기 또는 질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이의제기 또는 질의에 대하여 공공지원자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서면으로 답변하지 아니한 공공지원대행자 등 구성원의 구두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공적효력은 없음)

끝.